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1-11-25

춘 천 지 방 법 원

제 1 행 정 부

판 결

사 건 2020구합51387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redacted]

피 고 [redacted]시장

변 론 종 결 2021. 7. 20.

판 결 선 고 2021. 10. 12.

주 문

1. 피고가 2019. 9. 10. 원고에게 한 취득세 14,034,960원, 지방교육세 781,260원, 농어촌특별세 1,562,52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1-11-25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7. 5. 5. [redacted]시 B 답 2750㎡(이하 '이 사건 농지'라 한다)를 매수하여 2017. 5. 24.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당시 이 사건 농지가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20. 5. 19. 법률 제172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방세특례제한법'이라 한다) 제6조 제1항이 규정한 감면 요건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람으로서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사람 또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후계농업경영인(이하 통틀어 '자경농민'이라 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에 해당한다고 보아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받았다.

다. 피고는 2019. 9. 10. 원고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이 사건 농지의 취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할 때까지 이 사건 농지를 직접 경작하지 않았다'는 사유로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위 경감 받은 취득세 14,034,960원, 지방교육세 781,260원, 농어촌특별세 1,562,520원을 부과·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이에 불복하여 원고는 2019. 12. 6. 조세심판원에 조세심판을 청구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20. 6. 16.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8호증, 을 제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농지의 취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기 전에 이 사건 농지를 직접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1-11-25

경작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사유는 존재하지 않는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비과세요건이나 공제요건 등에 대한 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에게 있다(대법원 2009. 7. 9. 선고 2007두4049 판결 등 참조).

2) 가) 갑 제3, 4, 5, 7, 9, 10, 13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가 2017. 6.경 무렵부터 휴대전화(디지털 포렌직 절차를 거쳤다)로 촬영한 다수의 사진에서 이 사건 농지에 경작물이 심어져 있음이 확인되는 점, ② 2017년 및 2018년 위성사진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농지에 경작물이 있는 점, ③ 원고가 2018. 6. 경부터 2019. 8.경 사이에 수차례에 걸쳐서 농자재, 비료, 농약 등을 구입한 점, ④ '원고가 2017년경부터 이 사건 농지를 직접 경작하는 것을 보았다'는 다수의 목격자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농지를 취득한 2017. 5.경부터 2년이 경과하기 전에 이 사건 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인정된다.

나) ㉠ 피고는 2019. 7. 16. 이 사건 농지에 출장하였을 당시에 이 사건 농지가 나대지 상태로 방치되어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당시 촬영한 사진을 '을 제1호증'으로, 현지 출장복명서를 '을 제7호증'으로 각각 제출하였다. 그러나 위 출장 시기는 이미 원고가 이 사건 농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2017. 5.경으로부터 2년이 경과한 이후인바, 설령 위 시기에 이 사건 농지가 나대지 상태였다고 하더라도 위 증거들만으로 그 이전인 2017. 5.경부터 2019. 5.경 사이에도 원고가 이 사건 농지를 경작하지 않았는지 여부는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1-11-25

알 수 없다. 그 뿐만 아니라 출장 당시 이 사건 농지가 일시적으로 휴경상태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 피고는 농림사업정보시스템에 원고가 농작물을 수확하여 얻은 수익금이나 직불금 수령내역 등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직불금 조회자료 등을 '을 제8, 9호증'으로 제출하였다. 그러나 원고는 판매 목적으로 자경한 것이 아니라 직접 소비하거나 지인들에게 나눠주기 위하여 농작물을 경작했다고 주장하고 있고 지인들도 이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다(갑 제13호증). ㉢ 피고는 2019. 5. 16.경 인터넷 네이버 블로그에 '공장용지 목적으로 이 사건 농지를 임대한다'는 내용의 광고가 기재되었다고 하면서 그 블로그 화면을 '을 제6, 10호증'으로 제출하였다. 그러나 그 블로그 게시자가 원고로부터 의뢰를 받고 광고를 게시한 것이 아니라고 진술하고 있고(갑 제12호증), 달리 원고가 위 광고 게재에 관여하였다고 볼만한 정황도 없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을 제1, 6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만으로는 위 가)항 기재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고, 달리 반증이 없다.

3)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농지의 취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할 때까지 이 사건 농지를 직접 경작하지 않았음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라. 처분사유의 추가

1) 피고의 주장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항에 의하면,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할 때까지 '자경농민'으로서 농지를 직접 경작하지 아니한 경우"에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할 수 있다.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0. 1. 15. 대통령령 제303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1호는 '농지를 소유하거나 임차하여 경작하는 방법으로 직접 2년 이상 계속하여 농업에 종사한 사람'을 자경농민의 요건 중 하나로 규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1-11-25

정하고 있다. 원고는 이 사건 농지 취득 전부터 다른 농지인 [redacted]시 C 전 1,456㎡(이하 'C 토지'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었는데, 7년간 C 토지를 경작한 사실이 없으므로 자경농민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따라서 원고가 자경농민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2) 판단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에 있어서는 실질적 법치주의와 행정처분의 상대방인 국민에 대한 신뢰보호라는 견지에서 처분청은 당초처분의 근거로 삼은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만 다른 사유를 추가하거나 변경할 수 있을 뿐, 기본적 사실관계와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별개의 사실을 들어 처분사유로 주장함은 허용되지 아니하고, 여기서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 유무는 처분사유를 법률적으로 평가하기 이전의 구체적인 사실에 착안하여 그 기초가 되는 사회적 사실관계가 기본적인 점에서 동일한지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대법원 2001. 9. 28. 선고 2000두8684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당초의 처분사유는 '원고가 이 사건 농지의 취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할 때까지 이 사건 농지를 직접 경작하지 않았다'는 것이고, 피고가 이 사건 재판과정에서 새롭게 주장한 처분사유는 '원고가 C 토지를 7년간 경작하지 않아서 자경농민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것이어서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가 주장하는 위 처분사유의 추가는 허용될 수 없으므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1-11-25

재판장 판사 [redacted]

판사 [redacted]

판사 [redacted]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1-11-25

관계 법령

▣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20. 5. 19. 법률 제172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자경농민의 농지 등에 대한 감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람으로서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사람 또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후계농업경영인(이하 이 조에서 "자경농민"이라 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논, 밭, 과수원 및 목장용지를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 및 관계 법령에 따라 농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임야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2020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2년이 경과할 때까지 자경농민으로서 농지를 직접 경작하지 아니하거나 농지조성을 시작하지 아니하는 경우

▣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0. 1. 15. 대통령령 제303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자경농민 및 직접 경작농지의 기준 등)

① 법 제6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람으로서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사람"이란 본인 또는 배우자(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 1명 이상이 취득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1. 농지(「지방세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농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소유하거나 임차하여 경작하는 방법으로 직접 2년 이상 계속하여 농업에 종사할 것 끝.